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정비 : 6건
 - 부서명칭 변경 등 3건 :
 - 일자리창출과(신설), 미래산업과(변경), 기업유치지원과(변경)
 - 업무조정(이관) 등 3건
 -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: 생활경제과 → 일자리창출과
 -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무 : 생활경제과 → 일자리창출과
 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: 기업지원과(구) → 기업유치지원과
- 관련법령 등 정비 : 2건
 - 근거법령 개정 : 1건 (민속공예산업 육성)

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→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
- 자구수정 : 1건 (정보화담당관)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조직개편에 따라 별지의 일자리창출과(신설), 미래산업과(변경), 기업유치지원과(변경)로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
- 근거법령의 분리에 따라 민속공예산업 육성의 근거 및 적용범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
- 정보화담당관 소관 위탁대상 사무명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